해수부 '어촌뉴딜 3.0' 전남광주 7곳 선정…1천83억 투입

고흥·보성·장흥·강진 6곳 '전국 최다'…여수 1곳

문금주 "주민 체감 환경 정비·경제 활성화"

주철현 "정주여건·안전시설 개선 등 기대"

해양수산부의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개 항이 최종 선정됐다. 고흥·보성·장흥·강진 6곳에 이어 여수 남면 2개 항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총 1천83억3천5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 전국 최다 수준인 6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총 983억3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별 사업비는 고흥 399억100만원, 보성 96억원, 장흥 388억3천400만원, 강진 100억원이다.

사업 대상은 고흥 대영·나로도항과 외백·내백항, 보성 서당·객산항, 장흥 회진항과 동두·사금·신당항, 강진 용산·송학항 등이다.

이 가운데 고흥 대영·나로도항과 장흥 회진항은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수산·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해 어촌의 자생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고흥 외백·내백항, 보성 서당·객산항, 장흥 동두·사금·신당항, 강진 용산·송학항은 '어촌회복형'으로 선정돼 주민 생활·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금주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곳이 선정돼 983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단순한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생활 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여수에서는 주철현 의원 지역구인 남면 소유항·여천항이 최종 선정됐다. 두 항에는 2027년부터 4년간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여천항에는 주민 생활·복지서비스와 공동활동을 위한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하고 방파제를 연장하는 한편 물양장을 설치한다. 소유항에는 월파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를 연장하고, 두 항에 어민쉼터와 해양쓰레기 보관시설, CCTV 등 생활·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과 어항 안전시설이 한층 나아져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많은 어촌이 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소방 공무원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민주당 "한동훈, 호남 반도체 겁박 중단하라"

산은 부산 이전 등 발언…"지역갈등 조장"

조계원 "국가 핵심산업 정쟁화…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발언을 두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SNS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육성 약속도 정권이 바뀌면 버려질 것처럼 주장했다"며 "부산과 호남을 볼모로 삼아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전제하고 다른 지역의 정책 약속까지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 문제에 호남 반도체 사업을 엮어 정권이 바뀌면 폐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육성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마치 차기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지역민을 겁박하는 태도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부산과 호남의 미래를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한 의원이 말하는 개혁과 새로운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지역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태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과 지역 발전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SNS 정치와 겁박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광주 의원들 "서부권 의료공백 해소책 마련하라"

국립의대 무산 이후 불안 확산

중증 응급의료 체계 확충 촉구

"인프라·종합발전대책 병행"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립의대 신설 무산 이후 커진 전남 서부권의 의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프라 확충과 지역 종합발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광주 국회의원 전원은 9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도서·오지 주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중증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 대책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 유치와 전문인재 양성, 정주여건 확충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에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광주 의료인프라 확충 TF'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립의대 유치 무산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원이 의원(목포)의 건강 악화도 언급됐다. 의원들은 11일간 단식을 이어온 김 의원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며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단식은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겪는 절박한 의료 현실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알리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폐기·이익공유제 도입"

기본소득당이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 폐기와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며 호남 지역 정치 행보에 나섰다.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준호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최고위원(전남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준호 대표는 "기업의 성장만 있고 시민의 풍요가 없다면 성공한 지역발전이 아니다"며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원칙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 공공투자 수익의 지역사회 배분, 노동권·에너지·수자원·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은 이러한 원칙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원칙 위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산업은 발전하는데 혜택은 대기업과 소수 노동자에게만 향하고 정작 지역민들의 민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남광주는 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오는 26일 기본소득 포럼을 열고 산업 혁신 성과의 시민 환원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나주시 공고 제2026-1788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토지 및 물건조서를 확인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9일

나 주 시 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신가리, 양산리 일원
다. 보상대상 규모 : 348,886㎡(편입토지 380필지)
라. 사업기간 : 2027년 ~ 2036년
마. 사업시행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나주시장

2. 보상대상 및 토지(물건)조서
가. 보상대상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소재한 물건과 이에 대한 권리
1)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시·면	리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138)	223-3, 231-1, 231-11, 231-12, 231-13, 231-15, 231-16, 231-17, 231-18, 231-21, 231-22, 231-23, 231-24, 231-25, 231-26, 231-27, 231-28, 231-30, 231-32, 231-34, 231-39, 232-1, 232-2,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2-10, 233, 233-1, 233-2, 233-3, 233-9, 233-14, 233-21, 233-24, 233-27, 233-30, 233-31, 233-33, 233-34, 233-35, 233-46, 233-47, 233-48, 233-49, 233-50, 233-51, 233-52, 233-53, 233-54, 233-55, 233-56, 233-57, 233-59, 233-60, 233-61, 233-62, 233-63, 233-64, 233-65, 233-66, 233-67, 233-68, 234, 280-1, 280-2, 280-3, 280-4, 280-11, 280-14, 280-26, 280-27, 280-28, 280-32, 280-33, 281-9, 281-12, 281-14, 282, 282-1, 282-2, 283, 283-1, 284-2, 284-3, 284-4, 284-5, 284-8, 284-10, 284-11, 284-12, 284-14, 284-18, 284-19, 284-38, 284-39, 284-40, 284-41, 284-44, 284-45, 284-54, 284-56, 285-37, 285-38, 285-63, 606, 산143-5, 산143-8, 산144-2, 산144-3, 산144-4, 산144-5, 산145-2, 산145-3, 산145-5, 산145-6, 산145-8, 산145-9, 산145-10, 산145-11, 산155-2, 산155-3, 산155-5, 산155-11, 산155-12, 산155-13, 산156-2, 산156-3, 산156-5, 산156-6, 산157-1, 산157-2, 산158-1, 0-9764, 0-9767
	신가리(38)	165, 166, 167, 169, 170, 170-1, 173-1, 173-2,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11, 174-12, 174-13, 174-14, 174-15, 174-16, 174-17, 174-18, 174-19, 174-20, 174-24, 174-25, 174-26, 174-27, 174-28, 447, 449, 산1, 산2, 산2-2, 산2-3, 산15, 산15-1, 산16-2
	양산리(204)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8, 304-15, 304-16, 365, 365-1, 365-2, 365-3, 365-4, 365-5, 366, 367-3, 367-4, 377, 378, 380-4, 380-5, 381-5, 381-6, 382, 382-1, 382-3, 382-5, 382-7, 382-8, 384-1, 385, 385-1, 386, 386-1, 386-2, 387, 387-1, 387-2, 387-3, 388, 388-1, 388-2, 388-3, 388-4, 389, 389-1, 389-2, 389-3, 389-4, 389-5, 389-6, 389-7, 389-8, 389-9, 389-10, 389-11, 389-12, 389-13, 391-3, 391-5, 396-1, 396-8, 472-1, 472-2, 472-7, 472-8, 472-9, 472-12, 723, 723-1, 723-2, 723-3, 723-4, 724, 725, 726-1, 726-2, 726-3, 727, 728, 729, 729-1, 729-2, 729-3, 729-4, 730, 731, 731-1, 731-3, 731-4, 732, 733, 733-1, 733-2, 733-4, 733-6, 734, 735, 735-1, 736, 736-1, 737, 738, 738-1, 738-2, 738-3, 738-4, 738-5, 738-6, 739, 739-1, 739-2, 739-3, 739-4, 739-5, 739-6, 739-7, 740, 740-1, 740-4, 740-11, 740-12, 740-23, 740-24, 744-15, 산53-2, 산53-3, 산53-4, 산53-7, 산73-3, 산73-5, 산73-6, 산73-7, 산73-8, 산76-2, 산76-5, 산76-6, 산76-7, 산76-9, 산76-10, 산76-11, 산76-12, 산77-3, 산77-4, 산78-2, 산78-3, 산78-4, 산78-5, 산78-7, 산78-8, 산78-9, 산78-10, 산78-11, 산78-12, 산78-13, 산78-14, 산78-15, 산78-16, 산79, 산79-3, 산79-4, 산79-5, 산80-1, 산80-2, 산80-5, 산80-6, 산80-7, 산81-2, 산81-5, 산81-6, 산81-9, 산81-10, 산81-11, 산81-17, 산81-19, 산81-21, 산82-2, 산82-4, 산82-5, 산82-6, 산82-7, 산82-8, 산82-9, 산82-11, 산82-12, 산84-3, 산85, 산86, 산86-2, 산86-3, 산86-4, 산87, 산87-1, 산87-3, 산87-4, 산87-5, 산88, 산88-2, 산89-1, 산90, 산90-2, 산90-3, 산91

2) 편입 물건 : 위 편입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분묘 등 지장물 및 기타 물건 일체 (세부 내역은 물건조서 참조)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공태양지원팀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19, 2층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9-4654, FAX : 061-339-2927
나. 나주시 왕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터진목길 10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9-3636, FAX : 061-339-285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11. 9. ~ 11. 23.(15일간)
가.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에 물건 소유자 또는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나주시청 미래전략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제출(미래전략과, 왕곡면) 또는 우편 제출(등기우편)
- 제출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19(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2층 나주시청 미래전략과 인공태양지원팀
- 우편 제출 시, 열람기간 내 발송분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 시기
- 추후 개별 통지 예정이며, 보상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추천기한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에 한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나주시청 미래전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에 따른 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및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열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또는 가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처리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조사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주시청 미래전략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상절차, 토지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청 미래전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청 미래전략과 인공태양지원팀 ☎ 061-339-4654】